

이복현 “순자본비율 정비… M&A 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

관행개선 등 투자자 신뢰회복 당부
SM 주가조종 의혹 해소·대응 시사
“소비자 눈높이에서 세심히 살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예탁금 이용료율과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관행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독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두고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와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단기자금시장 경색에서 촉발되었던 증권사 유동성 이슈도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증권업계에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하는 등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증권사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취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와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약 부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에 큰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NCR 제도 종합 정비,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업계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굳건히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관행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문제는 그간 오랜 과제였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달 증권사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 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업공개(IPO) 회사의 발굴, 토큰증권 발행 등 경쟁력 제고에 힘써 달라”며 “금감원은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해 자본시장 내 다양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 확대는 우리 증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글로벌화에도 더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가 조종

의혹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서 절차적 준수 여부나 시장 혼탁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해 균형감있게 보려고 했다”며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단이냐 방법이 동원되면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과 규칙, 제도 내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에스엠 발행주식 총량의 25%를 주당 12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12만원에서 오르내리던 에스엠 주가는 지난달 16일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하이브는 “IBK 지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요청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증권 시세를 변동 또는 고지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귀농 5년차 연소득 3206만원… 10가구 중 7가구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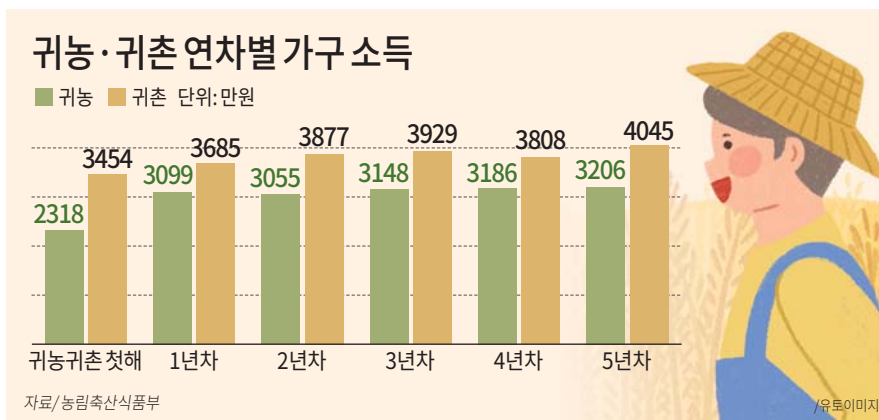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8년 비해 준비기간 줄어들어
유턴형, 무연고 경향 동반 증가
농식품부 “안정적 정착 중점 지원”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구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유턴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첫 해 연소득은 2268만원, 5년 후엔 3206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귀농·귀촌한 6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2월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구가 있는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유턴형(U형) 귀농귀촌 경향은 지속됐다. 특



히, 유턴형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 53%에서 지난해 조사에서 70.7%까지 증가했다.

반면, 귀촌가구의 경우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이 2018년 29.4%에서 2022년 34.6%로 증가 추세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1.0%), ‘가

업승계’(20.0%) 순으로 조사됐고,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2.6%), ‘자연환경’(14.1%), ‘정서적 여유’(13.2%)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귀농의 이유로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3.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에서 귀농 이유가 ‘자연

환경이 좋아서’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청년들은 직업으로서의 귀농을 선택한 것이라 분석이다.

귀농귀촌 5년차 연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은 3206만원(첫해 2268만원), 귀촌은 4045만원(첫해 3521만원)으로, 각각 41.4%, 14.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의 약 절반(45.4%)은 소득 증가, 재능 및 경력 활용 등을 위해 농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촌가구의 6.1%는 귀촌 후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원, 귀촌 216만원으로, 각각 귀농귀촌 이전 265만원, 258만원과 비교해 30.9%, 16.3% 감소했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조사에서 준비기간은 귀농의 경우 27.5개월, 귀촌은 21.2

개월이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각각 24.5개월, 15.7개월로 단축됐다.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는 응답은 귀농가구는 67.8%, 귀촌가구는 49.8%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가 나쁘다’는 응답은 각각 2.3%, 1.9%였다. 주요 갈등 요인으로는 귀농은 ‘마을 공동시설 이용문제’(35.1%), 귀촌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3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귀농 67.2%, 귀촌 67.4%)는 귀농귀촌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가구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귀농 39.9%, 귀촌 39.8%), 자금지원이라고 응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사전 준비와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LTV·DSR 범위 내 가능

>> 1면 ‘다주택자, 규제지역…’서 계속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 무는 없어지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

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한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한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들 수 있다. 기존 대출시점의 DSR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불가하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단 이날부터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후 즉시 시행된다.

/나유리기자 yul115@